

KFPA 화재안전인정제도 소개

안 갑 철 | 위험관리센터 과장

I. 머리말

KFPA 화재안전인정제도(KFPA Fire Safety Certification System)는 특수건물의 소유주, 자체점검 실시업체 및 기타업체로서 인정을 요청하는 업체 대표가 우리 협회(위험관리센터)에 신청하면 정해진 평가표에 의해 협회가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을 취득할 시에는 화재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협회가 인정하는 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화재 및 폭발로부터 안전관리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인정서와 인정패를 부여함으로써 수검업체의 화재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2000년 8월 8일 KFPA 화재안전인정제도의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 이사장의 품의를 받아 TFT를 구성하였다. TFT의 팀장인 위험관리센터 부장을 비롯한 5명의 팀원은 화재안전인정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국내·외 유사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 운영기준(안)을 제정하였다.

KFPA 화재안전인정제도 운영기준(안)은 FY2000 제4차 방재연구위원회 총괄위원회(위원장 위험관리본부장)에서 심의 통과되어 향후 보험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보험 제도개선’과 관련 “화재위험안전등급평가제도”와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동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컨설팅업무 등 수익성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금호그룹 사업장(금호석유화학 울산공장 등 15개 업체)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II. KFPA 화재안전인정제도 운영기준

주요 내용 요약

1. 명칭

- KFPA 화재안전인정제도(KFPA Fire Safety Certification System)

2. 적용 대상

- KFPA 화재안전인정제도에 참여를 요청하는 모든 업체

3. 평가

가. 평가방법

- 일정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최소 2명)이 평가대상업체를 방문하여 평가 실시

나. 평점산출 기준

- (1) 특수건물로서 안전점검 실시 업체

- ① 안전점검보고서에서 산출한 화재·폭

발위험 지수로 평점

(별표1 특수건물용 위험도지수 평점)

: 50% 적용

(2) 특수건물로서 안전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업체

① 안전점검보고서에 의해 산출한 화재·폭발위험 지수 평점 : 25% 적용

② 자체점검 평점(별표1 자체점검업체용 평가 양식) : 25% 적용

③ 업체의 위험관리상태에 따른 평점 (별표2 평가 양식) : 50% 적용

(3) 비특수건물

① 화재위험도지수(R) 평점(별표1 비특수 건물용 평가 양식) : 50% 적용

② 업체의 위험관리상태에 따른 평점 (별표2 평가 양식) : 50% 적용

(4) 해외 우수 인증제품 및 FILK 인증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평점에 10% 가산

4. 인정

가. 인정방법

(1) 상기 평가구분에 의해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인정대상업체로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뢰

(2) 평가위원회에서 인정업체를 심의하여 이사장의 재가를 얻어 인정서 및 인정패 수여 (문안: 별지 서식 4, 5호)

(3) 평가대상업체에 KFPA 화재안전인정 평가결과서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인정의 효력 및 사후관리

(1)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함

(2)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 평가하여 인정의 유효성 체크

5. 혜택

가. 인정업체 기술지원

(1)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시 우선 지원

(2) 방재실무교육 참가 및 위험관리정보회 원 가입시 비용 할인 적용

6. 수수료

가. 협회가 위험진단 및 자체점검한 업체는 무료

나. 기타 업체는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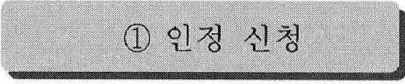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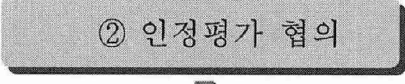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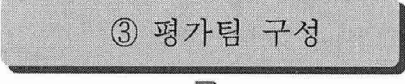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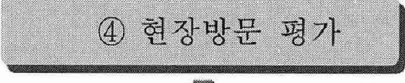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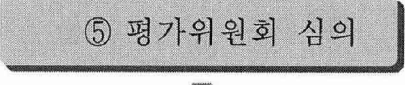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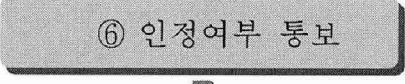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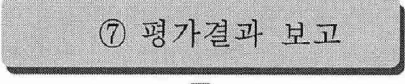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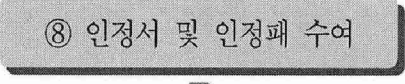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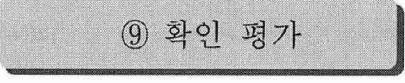
III. 맺는 말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는 우수 방화제품을 보급하고자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국제수준의 품질인증 기준에 의거 해당제품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장심사와 성능을 평가하는 엄격한 인증시험에 합격한 우수 방화제품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FILK)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품질인증을 거친 우수 방화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제조자에게는 국내·외 공신력 확보로 판매촉진효과를, 소비자에게는 재해예방과 함께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 1> 평가결과 등급

득 점 범 위	등 급	관 정
90점 이상 ~ 100점	S	안전관리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최우수 업체
80점 이상 ~ 90점 미만	A	안전관리체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업체
70점 이상 ~ 80점 미만	B	안전관리체제가 대체로 안정적이고 적정한 업체
70점 미만	C	안전관리체제가 다소 미흡하여 재정비가 요구되는 업체

<표 2> KFA 화재안전인정제도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도	주요 내용
	① 특수건물주, 자체점검실시업체 및 기타업체로서 인정을 요청하는 업체대표가 협회(위험관리센터)에 신청 (별지 1호 서식)
	② 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위험관리센터 또는 각 지부에 평가 요청
	③ 평가부서는 2인 이상으로 평가팀 구성
	④ ②의 평가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별지 2호 서식)
	⑤ 평가위원회(위원장: 방재연구위원회 총괄위원회 위원장)에서 심의
	⑥ 심의 후 14일 이내에 인정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인정대상업체에 통보 (별지 3호 서식)
	⑦ 인정서 수여 대상업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⑧ 이사장은 수여대상업체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 및 인정패 수여(별지 4호, 별지 5호)
	⑨ 인정유효기간은 인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1회 이상 확인평가 실시

이와 같이 방화제품 자체는 품질인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방화제품 및 방화시설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객관적인 화재안전 평가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KFA 화재안전인정제도는 소방대상물의 업종별, 규모별, 설비별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위험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객관적인 평가로 정량화 및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며 높은 점수의 인정등급을 받은 사업장에는 인정서와

인정패를 부여하여 우수 안전사업장으로 지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해올 것으로 예측된다.

KFA 화재안전인정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난 27년간 협회 안전점검 등에 대한 신뢰도 및 질적 향상뿐 아니라 기술력 축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보험요율 자유화에 따른 협회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